

채종림등에서의 벌채 등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관계	
산림 소유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채종림등 지정	고시번호	산림 소재지	면적	지정일
			m ²	
사업	종류	면적	기간	사유
		m ²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질 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수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검토 및 확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산림청)